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10300
결재일자	2016.5.2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동작구청장 방침 제129호

동시행 제담당자	자치행 정팀장	자치행 정과장	행정국 장	부구청 장	동작구 청장
오승훈	윤소연	정정숙	오영수	代오영수	05/28 이창우
협 조	행정지원과장		代정종록		
	부동산정보과장		홍상국		
	도시재생과장		전제선		

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행정구역(동) 경계 변경 계획

<p>추진근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자치법제4조의2,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9조의2 	
<p>사업추진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명 :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치 : 노량진동 315번지 및 상도동 363번지 일대 면적 : 32,001㎡ (노량진2동11,843㎡, 상도2동 20,158㎡) 규모 : 지하2층/지상25층, 7개동 471세대(임대84포함) 입주예정 : 2016. 8월말 	
<p>법·행정동 조정(안)</p>	
대상	상도제10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노량진동 302-431 외 94필지 11,843㎡
변경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정동 : 노량진동 구역 ➡ 상도동으로 편입 행정동 : 노량진2동 구역 ➡ 상도2동으로 편입

행 정 국
자치행정과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 토 여 부	비 고
추진 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지방자치법제4조의2,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9조의2)	
사업 추진 유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 확보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산 탐조 ()
이해관계인 유무	○ 주민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노량진2동, 상도2동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	
타 자원 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서울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보 필요성	○ 홍보대상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 조 ()

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행정구역(동) 경계 변경 계획

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일 아파트 단지내 행정구역이 노량진2동과 상도2동으로 혼재되어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(법·행정동)을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조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
- 행정구역경계변경 신청 [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조합 2016. 3. 22]
 - 사업구역내 노량진2동 11,843㎡를 상도2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요청

II 상도제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 현황

- 위 치 : 노량진2동, 상도2동 일대
 - 노량진2동 : 302번지, 314번지, 315번지, 산30번지 일대
 - 상 도 2동 : 326번지, 363번지, 371번지, 산13번지 일대
- 구역면적 : 32,001㎡(노량진2동 11,843㎡, 상도2동 20,158㎡)
- 건립규모 : 지하2층/지상25층, 7개동 471세대(임대 84세대 포함)
- 입주예정 : 2016. 8월말

III 현황분석

행정동 현황

(2016.4.30 현재)

구 분		현 황			조 정 후	
		면 적(㎡)	세 대	인구(명)	면 적(㎡)	세 대
편입되는 지 역	노량진동 (노량진2동)	650,000 (감11,843)	7,134	14,714	638,157	7,134
편입받는 지 역	상도동 (상도2동)	970,000 (증11,843)	11,109 (증471세대)	25,212	981,843	11,580

- 노량진2동에서 제외되는 면적(11,843㎡)은 전체면적 중 1.8%에 해당하며, 세대 및 인구수는 7,134세대, 14,714명으로 15개동 중 14위에 해당 됨.
- 상도2동으로 편입되는 면적(11,843㎡)은 전체면적 중 1.2%에 해당하며, 세대는 당초 11,109세대에서 471세대가 증가하고, 인구는 1,000여명 이상 증가하여 15개동 중 7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

동주민센터 실태조사결과 및 조합 의견

구 분	총 합 의 견
노 량 진 2 동	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상도2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고려할 때 적절하므로 상도2동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상 도 2 동	동일 단지내 입주민들이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초래되는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도2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함
조 합	사업구역내 행정구역 2개동이 혼재할 경우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므로 사업부지 경계를 따라 노량진2동을 상도2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요구

- 동 전체면적과 세대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면 상도2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63%대 37%로 노량진2동보다 높고 실태조사 결과, 해당 재개발조합과 대다수 주민들이 상도2동 편입을 원하고 있음

행정구역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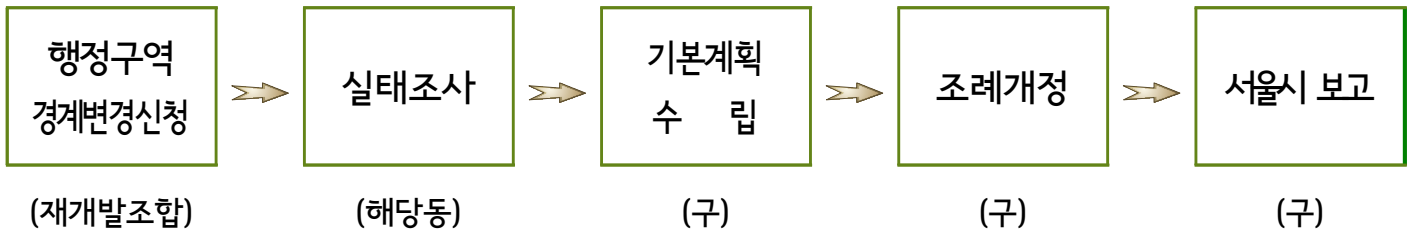
- 법·행정동 조정(안)

대 상	상도제10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노량진동 302-431 외 94필지 11,843㎡
변경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정동 : 노량진동 구역 ➡ 상도동으로 편입 • 행정동 : 노량진2동 구역 ➡ 상도2동으로 편입

- 사 유

- 노량진2동과 상도2동의 주민의견, 상도10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의견에 따라 동일단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행정처리 불편함 등을 감안하여 사업구역내 노량진2동 11,843㎡을 법정동은 상도동에 편입하고, 행정동은 상도2동에 편입하여 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.

추진 절차



V

추진 일정

조례개정계획수립 : 2016. 5월

-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 개정
-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

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, 구의회 안건제출 : 2016. 6월

조례 공포 및 각종 공부 정리, 관계기관 통보 : 2016. 7월(예 정)

VI

행정 사항

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 개정 : 자치행정과

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: 행정지원과

행정구역 경계변경관련 관계 법령

■ 지방자치법 제4조의2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〈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〉

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

제9조의2(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)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·면에 걸쳐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
2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
3. 행정구역 변경도

[전문개정 2011.7.5.]

【붙임 2】

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황

☐ 사업 개요

- 위치 : 동작구 노량진동 315, 상도동 363번지 일대
- 구역면적 : 32,001m²(국공유지 10,571m², 사유지 21,428m²)
- 구역여건 : 건물 103동(유허가 72동, 무허가 31동)
558세대 거주(세입자 382세대)
- 조합원 : 218명(조합장 : 이인재)
- 건축계획 : 지하2층/지상25층, 7개동 471세대(임대84포함)
연면적 68,941.44m², 용적율 261.53m², 건폐율 17.45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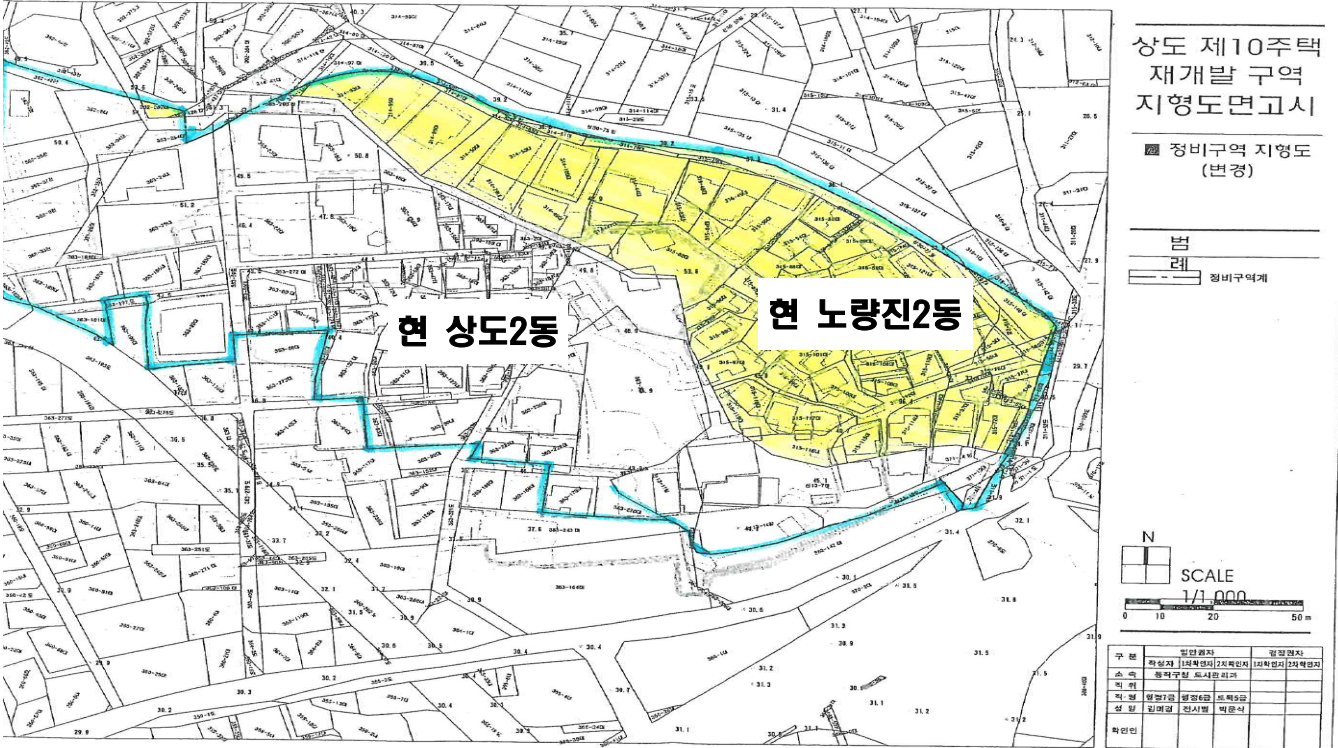
☐ 추진 현황

- 2006. 12. 14. : 주택재개발구역지정
- 2007. 3. 20.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
- 2009. 4. 20. : 사업시행인가
- 2011. 7. 22. : 관리처분계획인가
- 2012. 3. 8. : 사업시행변경인가(1차)
- 2013. 5. 16. :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(1차)
- 2013. 7. 18. : 사업시행변경인가(2차)
- 2013. 11. 28. : 이주 및 철거완료
- 2014. 3. 4. : 사업시행변경인가(3차)
- 2014. 4. 24. :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(2차)
- 2014. 4. 28. : 공사착공
- 2014. 6. 26. : 사업시행변경인가(4차)

☐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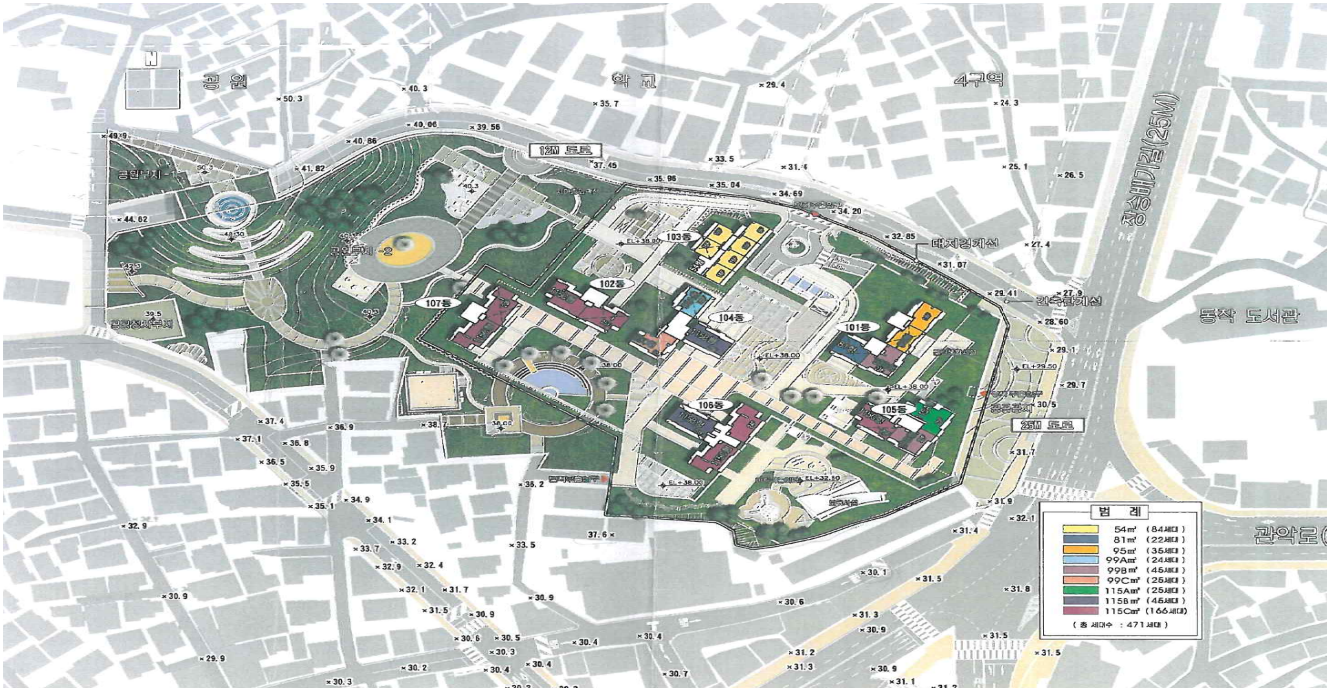
- 2016. 8. 27 : 준공예정

행정구역 변경도



※ 사업구역중 노량진2동(노란색 부분, 11,843㎡) 지역을 상도2동으로 편입

배 치 도



【붙 임 3】

인구 및 세대현황

작성기준 : 2016.4.30 현재

동명	세대수	인 구 수			세대당인구
		계	남	여	
합 계	171,677	401,501	196,876	204,625	2.34
노 량 진 제 1 동	14,569	33,440	16,760	16,680	2.30
노 량 진 제 2 동	7,134	14,174	7,232	6,942	1.99
상 도 제 1 동	21,006	47,345	23,393	23,952	2.25
상 도 제 2 동	11,109	25,212	12,247	12,965	2.27
상 도 제 3 동	10,713	25,299	12,317	12,982	2.36
상 도 제 4 동	12,409	29,809	14,790	15,019	2.40
흑 석 동	14,395	33,635	16,529	17,106	2.34
사 당 제 1 동	11,515	23,215	11,130	12,085	2.02
사 당 제 2 동	12,398	30,284	14,764	15,520	2.44
사 당 제 3 동	9,787	24,521	12,002	12,519	2.51
사 당 제 4 동	6,550	15,085	7,327	7,758	2.30
사 당 제 5 동	5,697	13,343	6,543	6,800	2.34
대 방 동	15,845	39,938	19,222	20,716	2.52
신 대 방 제 1 동	9,833	25,089	12,264	12,825	2.55
신 대 방 제 2 동	8,717	21,112	10,356	10,756	2.42